

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초안

#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2년 8월 29일

○ 회부일자 : 2002년 9월 2일

3. 제안이유

○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,

○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○ 조례명 중 “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”를 “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”로 변경함

○ 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과 도의회가 각각 2인을, 공사의 이사회가 3인을 추천하여 7인으로 구성함.(제3조제1항)

-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. (제3조제2항)
  - 경영전문가, 경제관련단체의 임원,  
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, 공인회계사, 공기업경영에  
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.
- 위원회는 사장의 후보가 사장으로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(제5조)
- 사장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하도록 함.  
(제8조제2항)

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  
조례안을 검토한 바

지방공기업법(법률 제6665호, 2002. 3. 25) 및  
지방공기업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7629호, 2002. 6. 19)이  
개정됨에 따라,

지방공사의 사장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 
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 
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 
사료됨.

**붙임 : 충청북도지방공사의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**